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20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20(목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3일

-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06. 9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센터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
-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방안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도내

복지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기능 재정립(안)이 도출됨에 따라,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기능을 개정하고, 운영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중 일부단체와 중복되거나 센터 기능에 불합리한 것을 변경, 통합하고, 신규 기능을 포함하는 등 조정을 통해 종전 9개 기능을 7개 기능으로 변경함.
 -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
⇒ “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”으로 변경 (대상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변경)
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
⇒ “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”으로 변경
 -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⇒ “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”으로 변경
 - “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”, “법인 관련 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·판매”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사업 삭제
 - 현재 시행 중인 “시설관리 및 임대사업” 추가
-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
 - 위원을 위원장 포함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)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중 유관기관과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, 포괄적이거나, 목적이 불명확하여 기능으로 적합하지

않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센터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복지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
3.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4.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
5.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
6.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
7.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

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자가 된다.

1.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
2. 수탁자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
3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
4.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·교류 지원 및 도내 민간복지에 관한 협의·조정</u> 2.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.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. <u>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</u> 5.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6. <u>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</u> 7. <u>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</u> 8. <u>사회복지법인 관련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·판매</u> 9. <u>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/u> (신설) 	<p>제3조(센터의 기능)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</u> (삭제) 5. <u>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</u> 6. <u>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 받은 사업</u> (삭제) 7. <u>시설관리 및 임대사업</u>
<p>제5조(운영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	<p>제5조(운영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13인 이내</u>

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자가 된다.

1.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

2. 수탁자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

3. (생략)

4. (생략)

.....

③.....

.....

1. 5인 이내의 자

2. 5인 이내의 자

3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